

2012년 19대 총선  
성소수자 인권 5대 영역,  
20개 과제 실현을 위한  
녹색당, 진보신당, 통합진보당과  
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지지단체 정책 연대

녹색당(대표 이현주), 진보신당(대표 홍세화), 통합진보당(공동대표 이정희, 유시민, 심상정, 조준호)과 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지지단체는 성소수자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 연대를 약속한다. 또한 아래 사항을 19대 총선 공약과 당의 중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것이 준수·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한다.

2012년 4월 3일

**정당 :** 녹색당, 진보신당, 통합진보당

**단체 :** 공익변호사그룹 공감, 동성애자인권연대, 언니네트워크,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,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,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, 한국레즈비언상담소,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

# 1

## 성소수자 차별 해소 및 평등 실현을 위한 법, 제도를 마련한다.

### 1) 구체적 차별을 명시한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.

-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장애, 병력, 나이, 언어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인종, 피부색, 출신지역, 용모 등 신체조건, 혼인여부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, 종교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전과, 성적 지향, 성별정체성, 학력(學歷), 고용형태, 사회적신분 등(이하 "성별등"이라 한다)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·구별·제한·배제·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권 기본법 제정

### 2) 병역법, 군형법 중 성소수자 차별 조항을 폐지한다.

- 군형법 92조 5항 계간 금지 조항 폐지
- 군인사법 시행규칙 53조 : 별표1.85 성인 행태장애 중 성적 동일성 장애, 성적 선호 장애 삭제
- 군인사법 시행규칙 56조 :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변태적 성벽자 삭제
-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폐기

### 3) 동성 간 파트너십 법률 제정 또는 관련 민법 개정한다.

- 1인가구, 비혈연가구 주거권 확보 및 동성 커플,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, 파트너십 인정
- 교육, 노동, 의료, 주거, 금융, 문화 등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

### 4) 국가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기본 계획 수립한다.

- 소수자 집단을 위한 별도의 연차별 인권 기본 계획 필요 및 이행
- 성정체성, 성적지향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혐오적 표현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인권계획 필요

### 5) 동성 및 성전환자/트랜스젠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, 지원을 위한 현행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한다.

### 6)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한다.



## 2

#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, 주거 등의 사회 정책 마련한다.

- 1)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건강불평등 유형 개발,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 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.
- 2) 트랜스젠더/성전환자들의 현저히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. 호르몬 투여 및 수술 등 성전환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의료보험 적용. 공공의료기관에 성전환자/트랜스젠더를 위한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 확충한다.
- 3) 1인 가구, 비혈연가구(동성커플 포함)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과 차별시정 지침 마련한다.

## 3

# 성소수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.

- 1) 근로기준법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, 고용보험법 등 현행 고용관련법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가족 개념의 재규정 및 성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성소수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 및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, 소수자를 포함한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.
- 2) 성인지, 성소수자 인지도적 노동정책과 성별 표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 또한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적극적 조치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고용 평등, 인권 계획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.

## 4

## 성소수자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, 지원(상담) 프로그램 제도화한다.

- 1) 행정기관, 사법기관, 입법기관, 교육기관, 군, 기업 내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시행한다.
- 2) 성소수자 및 성별정체성/성적정체성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상담가 및 담당 강사 양성 등 적극적인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 마련한다.
- 3)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,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한다.
- 4) 청소년 상담가 및 학교 상담 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.
- 5)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어 있는 여성 성소수자의 세대적 차별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 마련한다.



## 5

## 청소년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 및 평등한 교육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.

- 1)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상담 체계 및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(학원 등 교육공간)와 가정 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차별 및 폭력이 일어났을 때 접근 가능한 신고,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.
- 2) 청소년, 교사, 청소년의 가족, 지역 주민들에게 성소수자 인권 및 성적 다양성에 관련한 성교육 및 인권 교육의 실시를 강화하고, 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준비를 시행한다.
- 3) 학교 내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,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및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정책을 마련한다.
- 4) 청소년의 성적 지향,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, 동시에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의 심각성 및 인권 침해성에 대하여 사회적 환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한다. 가해자와의 분리 원칙에 따라 청소년이 자신의 거주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며,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친화적 정책을 마련한다.

